

『구미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우진석 의원 외 9인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조리 예방 및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- 정 의(안 제2조)
 - 공무원 등이란 시 소속 공무원,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임직 원을 말함
- 지급대상(안 제3조)
 - 직무 관련 금품수수 및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
 - 알선·청탁 행위
 - 직위를 이용 부당 이득을 얻거나,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
- 신고기한 및 방법(안 제4조 및 제5조)
 - 부조리 신고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을 준용 징계시효 만료일 3월 이전에 하여야 함
 - 징계시효 : 2년(단, 금품 및 향응수수, 공금횡령·유용의 경우 3년)
 - 신고방법은 신고자 인적사항 등 부조리 내용을 문서로 기재 하여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시 감사부서 제출

○ 신고사항 조사·처리 등(안 제6조)

- 시장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부조리 행위 등 신고사항 확인
- 시 감사부서는 신고접수 60일 이내 감사 또는 조사 완료
- 시장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가 발견된 경우 해당 공무원을 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(지방공기업 임직원→해당 공기업 장에게 징계요청)

○ 신고자 및 협조자 보호(안 제7조 및 제8조)

- 시장은 부조리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 보장
- 진술 등 감사 또는 조사 협조자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

○ 보상금 결정 및 지급(안 제9조 및 제10조)

- 시정조정위원회 심의·의결,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 결정 및 지급
 - 금품수수, 향응 : 금품수수 및 향응액 3배 이내 (최고 5백만원 이내)
 - 알선·청탁 : 제공된 금품액의 3배 이내 (최고 5백만원 이내)
 -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: 추정·환수 결정액의 10% 이내 (최고 1천만원 이내)

○ 보상금 지급제외 및 환수(안 제11조 및 제12조)

- 허위 또는 징계시효 만료된 신고사항 보상금 지급 제외
- 보상금 지급 후 지급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환수조치

4. 참고사항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3조의2
- 「형사소송법」 제234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

- 공무원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부조리 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 임

○ 주요 제정내용은

- 조례를 총 제13조로 규정하면서 안 제1조 내지 제3조는 목적 및 정의, 신고대상은 구미시 소속 공무원 및 시가 설립한 지방 공기업 임직원으로 하고 지급대상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, 향응제공, 알선 및 청탁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였으며
- 안 제4조 및 제5조는 신고기한은 지방공무원법의 징계시효 만료일 3월 이전으로 하고, 부조리 내용을 감사부서에 신고토록 하였음
- 안 제6조 내지 제8조는 신고사항의 조사·처리와 신고자 및 협조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
- 안 제9조 및 제10조는 보상금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로 산정하여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토록 하였음
- 보상금지급 기준은
 - 금품수수 및 향응 : 금품 수수액 및 향응액의 3배 이내 (최고 5백만원 이내)
 - 알선·청탁 : 제공된 금품액의 3배 이내(최고 5백만원 이내)
 -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: 추정·환수 결정액의 10%이내 (최고 1천만원 이내)

○ 검토결과

- 본 제정 조례안은 공무원의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투명한 공직사회의 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판단되며 타법에 저촉사항 없음